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발 급 기 간	세대주	공고사유
1	정*진	2009.08.07.	2026.09.01.~2027.08.31.	박*영	폐문부재

2. 공고기간 : 2026. 8. 19.(월) ~ 2026. 9. 3.(목)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(담당자: 조은지 031-5189-2732)

2026년 8월 19일

비 봉 면

